

## 소득자료 제출방법



### 홈택스

국세청 홈택스(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)를 이용한 제출

- STEP 01 로그인
- STEP 02 지급명세서 자료제출, 공익법인
- STEP 03 (일용,간이,용역) 소득자료 제출

### 손택스

스마트폰에서 '손택스 앱'을 이용한 제출

- STEP 01 로그인
- STEP 02 지급명세서 자료제출, 공익법인
- STEP 03 (일용,간이,용역) 소득자료 제출

### 서면제출

(서식 작성)

우편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



용역제공자 소득자료 매월제출

'24년 1월부터

#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추가

한달에 한 번 국세청홈택스로  
쉽고 편하게 제출하세요



제출방법 따라하기



제출기한 소득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

제출의무자 스포츠강사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알선·중개한 사업자

## '24년부터 소득자료 매월 제출대상 추가



- '21.11월부터 캐디, 대리운전, 퀵서비스 등 8개의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매월 수집하여 복지행정에 활용
- '24.1월부터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도 추가되는 것으로 법령(소득칙 제99조의 3)이 개정되어 매월 제출 대상으로 확대

### 업종 추가

#### 종전

캐디  
대리기사  
퀵서비스  
간병인  
가사도우미  
수하물운반원  
중고자동차판매원  
욕실종사원

#### 변경

(신설)  
**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**  
캐디  
대리기사  
퀵서비스  
간병인  
가사도우미  
수하물운반원  
중고자동차판매원  
욕실종사원

## 소득자료 제출의무자



### •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자

\* (의무제외) 사업자가 용역제공대가를 받아 원천징수한 경우

#### 예시

골프연습장(골프강사), 헬스장(헬스트레이너),  
요가사업장(요가강사), 골프장(캐디), 탁구장  
(탁구강사), 테니스장(테니스강사)

## 소득자료 제출기한



(예시) '24.1월 소득발생 → '24.2월 말일까지

소득자료	제출기한
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	용역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

## 소득자료 성실 제출시 세액공제 혜택



### • 적용요건

제출기한 이내에 흠탕스(손태스)를 통해  
용역제공자 인적사항, 용역제공기간, 용역제공대가 등  
기재할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적용

### • 적용기간

2021.11.11.~2026.12.31. 기간 중  
수입금액(소득금액) 발생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분

### • 공제금액

용역제공자 인원수 × 300원  
–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(최소 1만원)

### • 공제방법

과세자료 제출 의무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 
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)에서 공제

## 스포츠강사와의 대화

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명세서



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는 왜 추가되었나요?

스포츠강사의 소득을 파악하여  
**복지 사각지대를 해소**하기 위함입니다.

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는 누구를 의미하나요?

골프강사, 헬스트레이너, 필라테스(요가)강사,  
수영강사 등 **스포츠강습용역을 제공하는 자**를  
의미합니다.



사업자가 **스포츠강사 소득을 모르는 경우**에는  
어떻게 하나요?

사업자는 소득금액을 0원 기재하고,  
나머지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